

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

공시의 구분 :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

☐ 공통공시 :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

●● 공통공시의 범위

→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(지방재정법 제60조)

-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
-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현재액
- 기금운용 현황
-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
-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
-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
- 지방채권 현황
-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
→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(시행령 제68조)

- 재정분석·진단 결과
-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(상급 지자체 포함)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-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 - ▶ 중기지방재정계획
 - ▶ 보증채무 현황
 - ▶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
 - ▶ 청사관리운영
 - ▶ 업무추진비 집행현황
 - ▶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
 - ▶ 사회복지비 집행현황
 - ▶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
 - ▶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
 - ▶ 지방세·세외수입 채납현황
 - ▶ 원가회계정보
 - ▶ 투융자심사사업·지방채사업·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
 - ▶ 재정자립도·재정자주도·재정력지수
 - ▶ 지방공기업 부채 및 일반현황
 - ▶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
 - ▶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
 - ▶ 단체장 국외여비 집행현황
 - ▶ 지방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
 - ▶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
 - ▶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
 - ▶ 연말지출 비율
 - ▶ 성인지예산·주민참여예산현황
 - ▶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

☐ 특수공시 :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

-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 위원회에서 결정